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모범공무원증 크기를 변경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모범공무원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모범공무원증 크기 변경(안 별지)

모범공무원증의 크기를 현행 “205mm×292mm”에서 “240mm×340mm”로 변경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추후 관계기관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

3) 규제심사 등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

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서식 중 “205mm×292mm”를 “240mm×340mm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호

모범공무원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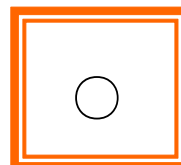
소 속

직급 또는 계급 성 명

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라 0000
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국무총리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00 - 4092